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80

발의연월일: 2020. 9. 17.

발 의 자:김승원·전용기·임호선

김진표 · 오영환 · 이용빈

전재수 · 김영호 · 한병도

안민석 · 한정애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 학대·유기 금지 등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,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증가로 반려동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으나,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 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훈련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및 제46조제3항제1호·제2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반려동물행동지도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 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
  - 2.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
  - 3.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
  - 4.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  - ④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2.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- 3.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반려 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.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선 설>	제22조의2(반려동물행동지도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 동물의 행동분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 2.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.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.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교육 4.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보려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업무 ④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

<u>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</u> <u>여서는 아니 된다.</u>
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 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   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2.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- 3.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 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-----

제46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\_\_\_\_\_

\_\_\_\_\_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2조의2제1항에 따 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 격을 취득한 사람
- 2.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 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 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 람
- 3. ~ <u>6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